

---

# 부록 I :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 감독

---

## 가. 도드-프랭크법의 연준 이사회 SIFI에 대한 강화된 감독<sup>79)</sup>

### 1) 강화된 건전성 기준

도드-프랭크법(Dodd-Frank Act; DFA)은 연준 이사회에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은행 지주회사와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강화된 건전성 기준을 개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연준 이사회는 다음 (A)~(D)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A) 다음의 해당 비은행 금융그룹들과 은행지주회사의 차이를 고려

- (i)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비은행 금융그룹 지정 시 고려된 요인들
- (ii) 금융그룹이 예금보험 대상 예금수취기관을 갖는 지 여부
- (iii) 비금융 영업활동 및 자회사
- (iv) 기타 위원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리스크 관련 요인들

(B) 가능한 한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비은행 금융그룹 지정 시 고려된 요인들에 따른 작은 변화가 시스템리스크 완화 목적의 건전성 기준을 심각하고 비연속적으로 변화시키지 않도록 해야 함.

(C) 건전성 기준과 보고 및 공시 요건의 수립과 세부요건 마련을 위한 금융안정위원회 모든 권고<sup>80)</sup>를 고려해야 함.

(D) 위원회는 운용자산이나 다른 영업행위를 포함한 금융그룹의 주된 사업에 맞추어 모든 기준을 적절하게 변형하여 적용해야 함.

---

79) DFA 165조.

80) DFA 제115조의 모든 권고 내용.

연준 이사회의 강화된 건전성 기준은 필수요건과 추가요건으로 구분된다(〈부록 표 I-1〉 참조). 필수요건은 리스크기준 요구자본 및 부채비율 한도, 유동성 요건, 종합적 리스크관리 요건, 청산 계획과 신용노출 보고요건, 그리고 집중한도가 있다. 비계열회사의 신용노출은 자본의 25% 이내로 제한된다. 현재 승인된 추가요건으로는 우발 요구자본 요건, 강화된 공시, 단기부채한도, 그 외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권고를 받은 적절한 건전성 기준이 포함된다.

또한 연준 이사회는 강화된 규제를 받는 외국 은행지주회사나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 시에는 (A) 국내회사 대우원칙과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B) 해당 은행지주회사나 비은행 금융그룹이 미국 연결감독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본국에서 연결기준 감독을 받고 있는지도 고려하여야 한다.

강화된 건전성 기준의 적용과 함께 연준 이사회는 다른 감독 수단을 통해서도 감독 대상 비은행 금융그룹 및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다. 이러한 수단으로는 우발 자본(Contingent Capital), 청산 계획 및 신용노출 보고서, 집중 한도, 강화된 공시, 단기채무 한도 등이 있다.

〈부록 표 I-1〉 도드-프랭크법의 강화된 건전성 기준

필수요건	추가요건
리스크기준 요구자본 및 부채비율 한도	우발 요구자본 요건
유동성 요건	강화된 공시
종합적 리스크 관리 요건	단기 부채 한도
청산 계획과 신용노출 보고 요건	기타 건전성 기준
집중 한도	

자료: DFA 제165조 (b)(1).

## 2) 우발 자본

연준 이사회는 감독 대상 비은행 금융그룹과 은행지주회사로 하여금 재무적 곤경 상황에서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최소한의 우발 자본을 유지하도록 요구하는 규제를 명령할 수 있는데 이때 다음을 고려해야 한다.

- (A)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모든 권고 및 위원회가 수행한 연구 결과
- (B) 이 항에 따른 우발 자본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적정 이행 시간
- (C) 금융안정감시위원회의 건전성 기준 권고<sup>81)</sup> 시 고려사항
- (D)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금융회사 또는 은행지주회사와 그 자회사에 적용되는 자본 요건
- (E) 기타 연준이사회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요인들

### 3) 청산 계획 및 신용노출 보고서

연준 이사회는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상당한 부실이나 실패를 겪는 경우, 신속하고 질서있는 청산을 위한 계획을 위원회, 연준, 예금보호공사로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는 다음을 포함해야 한다.

- (A) 해당 회사 소속 모든 예금수취기관이 관련 비은행자회사의 리스크로부터 적절히 보호되고 있는 정도와 방법에 관한 정보
- (B) 해당 회사의 소유구조, 자산, 부채 및 계약의무에 관한 모든 정보
- (C) 교차보증, 주요 상대방, 담보 우선자 등에 관한 정보
- (D) 규정 및 명령에 따라 연준과 예보가 공동으로 요구하는 기타 모든 정보

또한 연준 이사회는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 또는 은행지주회사가 금융감시위원회, 연준, 예금보호공사에 (A) 회사가 다른 주요 비은행 금융그룹 및 은행지주회사에 가지는 신용노출 성격 및 정도와 (B) 다른 주요 비은행금융회사 및 은행지주회사가 이 회사에 가지는 신용노출 성격과 정도를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연준 이사회와 예금보호공사는 각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과 은행지주회사가 이 절에 따라 제공한 정보를 검토해야 한다. 검토 결과 이들이 제출한 청산계획의 신뢰성이 약하거나 미국 파산법 11장(Chapter 11)에 의한 회사의 질서정연한 청

81) DFA 제165조 (b)(3)(A).

산을 촉진하지 않는다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경우, (A) 연준과 예보는 청산계획의 결함을 회사에 통보하고, (B) 회사는 청산계획의 이행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제안된 사업 운영 및 회사조직의 변화를 포함하여 청산계획을 수정하여 연준과 예보가 정한 기한 내에 다시 제출해야 한다. 수정된 청산계획은 신뢰성과 미국 파산법 11장에 의한 회사의 질서정연한 청산을 촉진한다는 것을 보여야 한다.

그러나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과 은행지주회사가 기한 내에 청산과 관련된 수정 계획을 앞 문단 (B)의 요건에 맞추어 제출하지 못 하는 경우, 연준과 예보는 결함을 시정하는 계획이 다시 제출될 때까지 해당 회사 및 그 자회사에 대하여 보다 엄격한 자본, 부채비율 또는 유동성 요건 또는 성장, 영업 또는 운영상의 제약을 공동으로 가할 수 있다.

또한 해당 회사가 (i) 앞 문단의 예보와 연준이 공동으로 부과한 보다 엄격한 요건을 위배하거나 (ii) 동 요건을 부과한 지 2년 이내에 청산계획 수정안을 다시 제출하지 못 할 때, 연준과 예보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해 미국법 11장에 의한 회사의 질서정연한 청산을 촉진할 것으로 인 지된 특정 자산이나 사업을 매각하도록 공동으로 명령할 수 있다.

#### 4) 집중 한도

어떤 개별회사의 실패가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 또는 은행지주회사에 미치는 리스크를 제한하기 위해 연준은 이러한 리스크를 제한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규제를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연준의 규제는 모든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과 은행지주회사가 관련이 없는 어떤 회사에 대해서도 회사 자본 및 잉여금의 25%를 초과하는(또는 연준 이사회가 미국 금융안정성을 위해 리스크를 경감하는 데 필요한 규제로 정하는 하한 금액) 신용노출을 금지 한다. 이때 신용노출은 다음을 말한다.

- (A) 대출, 예금, 신용 공여를 포함한 회사 신용의 모든 형태
- (B)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과 은행지주회사에 신용노출을 생성시키는 정도에 따라 회사와의 모든 환매계약, 역환매계약, 회사와의 모든 주식 대차 거래

- (C) 회사 이름으로 발행된 모든 보증, 어음, (보증 신용장을 포함한) 신용장
- (D) 회사가 발행한 모든 구매 또는 투자 주식
- (E) 모든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과 은행지주회사와 해당 회사 사이의 파생 거래와 관계된 회사에 대한 거래상대방 신용노출
- (F) 규정으로 연준 이사회가 이 절의 목적을 위해 신용 노출로 판단하는 다른 모든 유사한 거래

## 5) 강화된 공시

연준 이사회는 규정을 만들어 해당 회사의 리스크 프로파일, 자본적정성, 리스크 관리 능력에 대한 시장 평가를 돕기 위해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과 은행 지주회사의 정기적 공시를 명할 수 있다.

## 6) 단기채무 한도

연준 이사회는 규정을 만들어 과도한 단기채무 누적이 금융회사 및 미국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경감하기 위해 모든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이 누적한 부외 노출을 포함한 단기채무 금액(amount)의 한도를 정할 수 있다. 이 절의 목적을 위해 “단기채무”란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예금을 제외한 연준이 규정에 의해 정하는 만기가 단기인 부채를 의미한다. 연준이사회는 이 절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의를 포함한 규제, 명령 등을 이 절과 일관성 있게 추가로 만들 수 있다.

## 7) 리스크 위원회

연준 이사회는 연준 감독 대상 비은행 금융그룹이 상장회사인 경우 연준 감독 대상 비은행 금융그룹으로 최종 지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리스크 위원회

를 설립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은행지주회사의 경우 연준 이사회는 (A) 연결기준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 이상이고 상장된 모든 은행지주회사는 리스크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하며 (B) 연결기준 자산규모가 100억 달러 미만인면서 상장된 모든 은행지주회사는 리스크 위원회를 설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리스크 위원회는 (A)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의 전사 적리스크관리 행위를 감시하는 책임을 가지며, (B)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의 영업, 자산규모 및 다른 적절한 기준에 따라 연준이사회가 정하는 일정 수의 독립이사를 포함하여야 하고, (C) 대형 복합 회사의 리스크 노출을 인지, 평가 및 관리한 경험을 가진 1명 이상의 리스크관리 전문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 8) 스트레스 테스트

적절한 1차 규제기관 및 연방보험청과의 공조를 통해 연준 이사회는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이 그룹 전체 연결기준에서 경제적 악조건의 결과로 인한 손실을 흡수하는데 필요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연차 분석을 시행하여야 한다.

연준 이사회는 기본(baseline), 악조건(adverse), 심각한 악조건(severely adverse)을 포함한 최소한 3개 이상의 다른 조건을 제공하여 이 절에서 요구하는 평가를 받도록 해야 하며, 연차 평가에 추가하여 은행지주회사 및 비은행 금융그룹에 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미국 금융안정성에 대한 리스크를 인지, 특정 및 평가하는데 필요한 다른 분석기법을 개발하고 적용할 수 있으며,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연준 이사회는 적절하다고 판단 시 회사에 청산계획을 업데이트할 것을 요구해야 하고 평가 결과의 요약을 발표해야 한다.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은 반년마다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야 하며, 100억 달러 이상의 연결자산을 보유하고 1차 금융규제기관의 규제

를 받는 다른 모든 금융회사는 매년 규정에 따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해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이 요구되는 회사는 연준과 1차 금융규제기관에 1차 금융규제기관의 요구에 따른 양식과 시기에 맞추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연방 일차 금융규제기관은 연준 이사회 및 연방보험청과의 공조를 통해 일관성 있고 비교가 가능한 규제를 통해 이 문단을 이행하여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어휘는 이 문단의 목적에 맞게 정의되어야 하고, 기본(baseline), 악조건(adverse), 심각한 악조건(severely adverse)을 포함한 최소한 3개 이상의 다른 조건을 제공해야 하는 요건에 맞추어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요건에 맞춘 보고서의 양식과 내용을 수립해야 하며, 요구되는 스트레스 테스트의 결과 요약을 발간해야 한다.

## 9) 부채비율 한도

연준 이사회는, 금융안정감시위원회에서 해당회사가 미국 금융안정성에 심각한 위협을 미치고 해당 요건의 부과가 해당 회사의 미국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리스크를 경감시키는데 필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연결기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지주회사 또는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에 부채 대 자본 비율을 15 대 1 이하로 유지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단, 연방주택대부은행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10) 요구자본 계산 시 부외활동 포함

은행지주회사 및 연준 감독을 받는 비은행 금융그룹의 자본 요건에 맞추려는 목적의 자본 계산은 회사의 부외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sup>82)</sup> 이 절의 목적을 위해, “부외활동”은 현재는 회계장부상 부채는 아니나 부채를 생성할 수 있는 한도에서 다음 거래를 포함한 어떤 미래 사건 발생 시 장부에 부채로 잡힐 수 있는 금융그룹의 부채를 의미한다.

82) 단, 연준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 해당 회사나 회사가 연관된 거래를 적용제외 할 수 있음.

- (A) 보증신용장을 포함한 은행이 자기 신용을 제3자에 대체하는 직접신용대체  
(direct credit substitutes)
- (B) 면세 유가증권 또는 어음 변제를 보증하는 취소 불능 신용장
- (C) 은행인수어음(bankers' acceptances)<sup>83)</sup> 안에서 리스크 참여
- (D) 매출 또는 재구매 계약
- (E) 매각자에게 상환청구 또는 소구(recourse)<sup>84)</sup>할 수 있는 자산 매각
- (F) 이자율 스왑
- (G) 신용 스왑
- (H) 상품 계약
- (I) 선물 계약
- (J) 유가증권 계약
- (K) 연준이사회가 규제로서 정의하는 다른 거래나 활동

## 나. 시스템적 중요성을 고려한 국내 비은행 금융그룹 감독

복합금융그룹이 부실 또는 실패 시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되는 경우, 그 시스템적 중요성에 비례한 추가적 감독을 통해 사업모형 및 조직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경감시키고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추가적 손실흡수를 위한 자본규제와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 등의 강화된 감독이 필요하다. 또한 시스템리스크의 선제적 모니터링을 위한 보다 넓은 범위의 감독협의체 구성도 요구된다.

83) 무역거래를 위해 발행된 기한부 환어음을 은행이 지급을 보장 인수한 어음. 기업이 수출입 대금 결제를 위해 발행한 어음에 은행의 신용이 더해진 것.

84) 제1차적 이행의무자가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차적 의무자에게 그 이행을 청구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어, 어음·수표상의 권리관계에서 약속어음 발행인, 환어음 지급인 또는 인수인, 수표의 지급인이 제시 기간 내에 지급을 거절했을 경우 또는 환어음의 인수인이 인수할 것을 요구받았는데도 인수를 거절했을 경우에 변제 할 사람, 즉 약속어음의 배서인, 환어음수표의 발행인 및 배서인에 대하여 어음수표금액의 지급을 청구하는 것을 소구(遡求) 또는 상환청구(償還請求)라고 함.



## 1) 추가손실흡수를 위한 자본규제

비은행 금융그룹에 대한 추가적 자본규제는 두 가지 효과를 가져온다. 첫째, 시스템리스크를 통해 금융그룹이 발생시키는 부정적 외부효과를 내부화한다. 시스템리스크는 일종의 사회적 비용으로 볼 수 있으며 이를 내부화하려면 금융그룹이 이를 부담하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추가적 자본을 요구하면 자본비용이 늘어나므로 이러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둘째, 금융그룹이 스스로 시스템리스크를 경감하려는 유인을 제공한다. 시스템적 중요성에 비례한 추가적인 자본을 부담시킴으로써 금융그룹으로 하여금 시스템리스크를 낮추어 이를 회피하도록 만드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추가적 자본규제에서 중요한 점은 비례성의 원칙을 지켜 시스템적 중요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추가자본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스템적 중요성에 비해 과중한 자본부담은 과도한 자본비용을 통한 금융그룹 운영의 비효율을 초래하며 오히려 미시적 건전성을 해칠 수도 있다. 따라서 은행그룹과의 시스템리스크 차이,<sup>85)</sup> 비은행 금융그룹 사이에서도 사업모형에 따른 시스템적 중요성의 차이에 따라 차등적인 자본을 추가로 요구해야 규제의 의도를 살릴 수 있다.

아직까지 국제적으로 통일된 보험그룹 자본규제는 없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추가손실흡수 방안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현재 보험감독 기준제정 국제기구인 보험감독자협의회(IAIS)에서 국제적으로 공통된 자본규제인 보험자본기준(Insurance Capital Standard; ICS)을 제정하고 있다. 또한 G-SIIs 감독방안의 하나인 추가손실흡수자본(Higher Loss Absorbancy; HLA)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ICS가 제정되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모든 보험그룹의 추가손실흡수자본 산출의 근거로 활용될 전망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ICS 제정 및 G-SIIs 자본규제의 국제적 논의 흐름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하여 향후 국내 감독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85) 미국은 추가적 자본규제는 연결기준 자산 500억 달러 이상의 은행에 대해서만 시행하고 있으며 비은행 금융그룹은 일반적인 적용에서 제외함.

## 2) 주기적 스트레스 테스트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이 그 부실로 말미암아 금융시스템 및 실물경제에 주는 충격은 일단 발생하는 경우 대량실업과 경기후퇴 등 국가 경제적으로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탐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 대해서는 적어도 1년에 한 번 주기적인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할 필요가 있다.<sup>86)</sup>

그룹단위 스트레스 테스트는 금융그룹이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에도 이로 인한 손실을 흡수할 수 있는 충분한 자본을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금융당국은 경제상황을 기본, 악조건, 심각한 악조건 등을 포함하여 최소한 3개 이상의 다른 조건에서 평가하며, 필요한 경우 주기적인 평가에 더하여 금융그룹에 자체적인 평가를 추가적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금융그룹에 시스템적 중요성 경감방안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스트레스 테스트 시행이 요구되는 금융그룹은 금융당국이 요구하는 정보를 포함한 보고서를 해당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금융당국은 스트레스 테스트에 필요한 절차를 수립하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시행하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발표한다.

## 3) 감독협의체의 구성과 운영

금융그룹에 대한 감독은 금융그룹에 소속된 개별 금융회사의 활동 및 리스크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를 금융그룹 단위에서 공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별 금융회사 감독자들 사이의 원활한 정보공유와 협력이 요구된다.<sup>87)</sup>

그룹단위 감독을 위한 감독자 간의 소통과 협조를 원활하게 하는 방안으로 금융그룹별로 감독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 감독협의체 구성의 목적은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의 해당 권역 감독자들이 정기적으로 모여 금융그룹 전반의 감독관련 정보

86) 미국은 연준 감독을 받은 비은행 금융그룹의 경우 6개월에 한 번 스트레스 테스트를 받음.

87) 보험핵심원칙 제25장(ICP 25) 감독 조정과 협력.

를 공유하고 감독관련 이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개별회사단위 감독에서 놓칠 수 있는 금융그룹 감독의 사각을 사전에 감지하여 보완할 수 있어 전반적인 금융감독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감독협의체의 구성은 금융그룹 내 모든 금융회사의 감독자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여 감독자들 사이에 해당 금융그룹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감독협의체 의장은 금융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모회사가 금융회사인 경우, 해당 감독자가 맡을 수도 있으며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중에서 감독 중요도가 높은 회사의 감독자가 맡을 수도 있을 것이다.

감독협의체를 통해 금융그룹의 감독자들은 그룹단위 감독에 필요한 다양한 사안을 협의할 수 있다. 우선 금융그룹의 개요 및 운영구조 등 큰 틀에 대한 파악이 용이해진다. 개별회사의 리스크 분석 및 자회사 간의 금융거래 등도 금융그룹 감독의 맥락에서 의견 교환이 가능해진다. 특히 금융그룹의 긴급 상황 발생 시 감독협력 및 조정과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절차를 사전에 협의하여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기대된다.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의 감독협의체 구성은 일반적인 금융그룹 감독협의체의 그것보다 구성원의 전문성이 보다 다양할 필요가 있다.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영향력을 고려하기 위하여 각 금융권역 감독자는 물론 통화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은행, 재정 및 외환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 및 부실 금융회사 정리를 담당하는 예금보험공사 등의 참여도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영향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응과 금융그룹 부실 시 질서정연한 청산 등이 선제적으로 논의되고 필요 시 금융그룹의 시스템적 중요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감독이 이루어져야 한다.

#### 4) 리스크 지배구조 및 공시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비은행 금융그룹의 리스크 지배구조 및 공시 등에 대한 규제는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에서 규정하는 리스크 지배구조 및 공시관련 규제와 함께 공

정거래법의 대규모기업집단에 대한 공시를 활용하여 규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현재 금융당국에서 시행을 준비 중인 보험회사의 자체 위험 및 지급여력 평가 제도(ORSA)를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금융그룹에는 그룹단위로 확장하여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금융그룹이 자체적으로 시스템적 중요성을 포함한 전사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면서 금융당국에 보고하고, 금융당국은 이를 평가하여 그룹단위 감독에 반영하도록 할 수 있다.